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기반한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비교 분석

An International Standards-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Research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Schedules in Overseas Universities

윤여진(Yeojin Yoon)¹, 김순희(Soonhee Kim)²

E-mail: yyyj4248@kongju.ac.kr, siva@cnu.ac.kr



¹ 제1저자 국립공주대학교 기록연구사,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록학과 박사 수료
² 교신저자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6-07-13
최초심사 2026-07-18
게재확정 2026-08-10

ORCID

Yejin Yoon
<https://orcid.org/0009-0008-3212-4987>
Soonhee Kim
<https://orcid.org/0000-0001-9510-3819>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에 나타난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중국의 12개 연구중심대학을 대상으로 문헌 기반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ISO 15489-1:2016과 ISO/TR 21946:2018을 바탕으로 처분지침의 구조·내용·운영에 관한 통합적 분석 틀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해외 대학들은 기록관리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지침을 기관의 고유한 정보 자산 보호와 위험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정보 거버넌스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설계 및 평가 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ABSTRACT

Based on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ppraisal frameworks reflected in the research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schedules of overseas universities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research records appraisal system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To this end, a literature-based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cross 12 research-intensive univers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and China. Utilizing ISO 15489-1:2016 and ISO/TR 21946:2018 as theoretical foundations, an integrated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to address the structure, content, and operation of retention and disposal schedul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overseas universities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research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schedule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Furthermore, these schedules are employed as strategic information governance tools to protect the institutions' unique information assets and manage risk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designing research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schedules and establishing an appraisal system for domestic universities.

Keywords: 연구기록물, 기록처분지침, 기록관리 표준, 기록평가, 정보 거버넌스
Research records,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Schedules, Records
Management Standard, Records Appraisal, Information Governance

<https://jksarm.koar.kr>

www.kci.go.kr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학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더불어 연구기록물을 생산하는 핵심 주체인 동시에, 공공의 책무성을 지닌 사회적 기관이다. 최근 주요 세계 대학 평가에서 연구 생산성이 대학의 위상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부각됨에 따라(정수정, 2026), 연구 성과의 지속적인 축적과 재현성 증진을 위한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에서 더욱 활발하게 나타난다. 유네스코는 2021년 11월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UNESCO Recommendation on Open Science)을 채택하여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 확대와 데이터 공유 원칙을 국제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미국 역시 2023년을 ‘오픈 사이언스의 해’로 선언하고 연구성과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등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추세이다(이민정, 2023; 장수현, 남영준, 2024). 아울러 국내에서도 2021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2026년 「국가연구데이터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연구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appraisal)’가 필수적이다. ISO/TR 21946:2018에 따르면 ‘평가’는 어떤 기록물을 생산하고 획득해야 하는지,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존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생애주기의 핵심 절차이다. 처분지침은 이러한 평가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핵심 도구로서 기록물의 보유기간과 처분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생애주기 전반의 통제 수단으로 작동한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빅데이터 환경에 따른 연구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는 대학에 전략적 선별과 평가의 필요성을 일깨운다. 아울러 기록물 평가 개념이 ‘연속적 개선 순환과정’(Continuous improvement cycle)으로 확대되면서(ISO, 2018), 생산 단계부터 연구기록물의 범위와 통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관리는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급변하는 법적·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별표1]에서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에 적용하기에 지나치게 일반적이라는 한계가 지적되었다(이미영 외 2018). 또한 법령상 기관이 보유한 기록물의 처분을 최종 승인하거나 허가하는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현문수, 2019). 국가기록원이 2024년에 기존 가이드를 보완한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책정 준칙」을 제정·공표하였으나, 형식적 개편에 그쳤을 뿐 연구기록물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 변화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연구기록물에 대한 요건 분석이나 사전 조사 없이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기준만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현 체계가 과연 대학의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록물의 처분을 결정하는 잣대로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요컨대, 급격한 데이터의 증가와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 속도에 비해 현행 연구기록물 관리 제도는 대응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 대학은 학문 분야별로 복합적인 연구기록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연구가 곧 교육’이 되는 환경의 특성상 연구기록물이 지닌 다양한 활용 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기록물은 정부 및 산업체 등 외부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및 소유권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록물 평가 시 단순한 보존가치를 넘어 계약 조건 및 법적 권리관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학 조직의 고유한 특수성은 타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정교한 평가 거버넌스 설계를 요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에 나타난 평가 체계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해외 대학은 독립적인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데이터 정책과 처분지침을 연계하는 등 연구기록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를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기록물 평가제도 설계를 위한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중국의 연구중심대학을 중심으로 처분지침의 구조와 내용, 운영상의 특징을 비교·분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평가제도 수립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분석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분석을 통해 평가제도의 구조와 운영방식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국내외 주요 선행연구를 아래와 같이 범주화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기록물 평가체계의 흐름과 한계점을 식별함으로써, 본 연구가 지니는 학술적 필요성과 차별성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기록물의 평가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이미영(2014; 2015; 2016)은 연구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기록물과 차별화된 독자적 평가기준 및 처분지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특히 호주와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연구과제 단위의 관리 체계 도입과 기관 공통 및 연구 분야별 고유 일정표를 병행하는 이중적 운영체계를 제안하며 국내 연구기록물 평가제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둘째, 공공기록물의 보유 및 처분일정표 설계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설문원(2006)은 ISO 15489를 기반으로 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보유일정 재설계를 위한 기초 모델과 원칙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미영 외(2018)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공통 행정기능을 도출하고 단위업무별 보존기간을 책정함으로써 실무적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기존 분류체계와 처분기준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기관의 업무 기능과 기록물 유형을 반영한 맞춤형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McDonald와 Léveillé(2014)는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 기록관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록물 보유 및 처분일정표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빅데이터 및 오픈 사이언스 환경에서 종이 기반의 전통적인 관리 방식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며, 보존의 근거를 개별 기록물이 아닌 데이터를 생산하는 ‘업무 프로세스’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보유일정이 단순히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도구를 넘어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 차원의 포괄적인 기록물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오픈 사이언스 확산에 따른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을 다룬 연구이다. 김지현(2013)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15개 정부연구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을 정의, 관리원칙, 계획, 실행, 법·윤리 측면에서 각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관리대상의 명확화와 데이터 관리계획(DMP)의 도입, 데이터 공유·보존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2020년 이후에는 대학의 연구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인식 조사,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 제안 등 다방면에서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채현수 외(2021)는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데이터 관리에 관한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박형정과 김지현(2021)은 도서관이 DMP 서비스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인프라적 요소를 구체화하였다. 장수현과 남영준(2024)은 일본 65개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을 비교하여 대학 차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과 기관 리포지터리 역할 확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인프라 구축 수준에 비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비율이 낮음을 지적하며, 향후 대학 차원의 명확한 규정 정비와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처분지침이나 평가기준 등 제도적 규범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연구기록물의 불완전성이 대학 운영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Wilson et al.(2007)은 연구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연구기록물의 부실이 전체 조사 사례의 38%에서 확인되었으며, 불완전하고 비체계적인 기록물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연구기록물의 질적 결함은 조사 지연이나 실패로 이어져 연구의 신뢰성과 기관의 책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특정 부정행위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연구자의 4분의 1 이상이 경험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기록물 평가 및 관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연구기록물의 고유한 특성 및 변화된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도록 보유 및 처분체계를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대학이라는 특수한 연구 현장에서 연구기록물의 실질적인 평가 및 처분 방식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해외 대학의 처분지침은 국내 제도 설계의 유효한 참조 모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 실정에 맞는 연구기록물 평가 체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중국의 사례가 검토된 바 없다는 점에 주목하여, 서구권 국가 및 중국의 사례를 병행 고찰함으로써 선행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연구의 독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및 분석틀

2.1 분석대상 및 선정기준

본 연구는 해외 주요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에 나타난 구조적 특징과 운영 방식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중국의 연구중심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국·공립대학과 설립 주체와 재정 구조가 유사한 해외 공립대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특히 연구개발 규모가 방대하고 독자적인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연구비 수탁 규모와 정부 재정 지원 비중, 연구기록물 및 연구데이터에 특화된 고유 처분지침의 제정 및 시행 여부, 기록관리 전담 조직의 운영 및 제도적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별 연구 환경의 특수성과 기관별 전문성이 반영된 12개 대학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미국 고등교육 연구개발비는 2023회계연도 기준 총 1,088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연방정부 지원금은 약 600억 달러로 전체의 약 55%를 차지한다(Gibbons, 2024). 가장 많은 R&D 지출을 보고한 상위 10개 기관 중 상당수가 공립대학이라는 사실은 연구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제도적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위스콘신메디슨대학(이하, UW Madison), 텍사스오스틴대학(이하, UT Austin), 캘리포니아대학시스템(이하, UC 시스템)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대학들은 카네기 분류(Carnegie Classification)¹⁾상 최상위 연구 수준인 ‘R1’(Very high research activity) 등급으로 지정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연합체 중심의 대학시스템(University System)(KUSCO, 2011) 체제 아래 각 캠퍼스가 독립적으로 방대한 연구기록물을 생산관리하고 있어, 본 연구목적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영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공적 자금 지원은 ‘이중지원’(dual support) 제도에 따라 운영된다. Research England는 대학의 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해 연간 블록 보조금인 품질 기반 연구자금(Quality-related Research)을 배분하며, 영국 연구혁신청(UKRI) 산하 연구위원회들은 특정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경쟁적 연구기금을 제공한다(Research England, 2023). 본 연구는 2023년 기준 QR기금 배분액이 5,000만 파운드를 초과하여 최상위권의 연구 인프라를 보유한 킹스컬리지런던(이하, KCL),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이하, UCL), 케임브리지대학(이하, CAM)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은 영국의 연구중심대학 협의체인 ‘러셀그룹(Russell Group)’의 핵심 일원으로서, 영국 내 연구비와 계약 자금의 상당 비중을 차지할 만큼 독보적인 연구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호주 연구회(Australian Research Council)와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를 통해 배분되는 정부의 국가 경쟁 연구기금(Category 1)을 중심으로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이 추진된다(Universities Australia, n.d.). 특히 호주의 8대 연구중심대학 연합체인 그룹 오브 에이트(Group of Eight)

1)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을 분류할 때 가장 널리 이용되는 기준으로 학위 유형, 교육 환경, 학문 수준, 연구 규모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의 등급을 R1(Very High Research Activity), R2(High Research Activity), D/PU(Doctoral/Professional Universities) 등으로 구분한다(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n.d.).

는 국가 전체 경쟁 연구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호주의 연구 생태계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방대한 연구 성과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호주의 연구 윤리강령 등 엄격한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호주국립대학(이하, ANU), 멜버른대학(이하, UoM), 뉴사우스웨일스대학(이하, UNSW)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국가 핵심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기초연구와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본격 시행된 ‘쌍일류(双一流) 정책’을 통해 우수 역량을 보유한 핵심 대학에 대규모 재정을 집중 배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이수진, 2018; 조진실, 홍미영, 2024).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교육부 직속 연구중심대학이자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갖춘 칭화대학(이하, THU), 난징대학(이하, NJU), 저장대학(이하, ZJU)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대학은 2025년 기준 연간 예산이 최소 100억 위안을 상회하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받고 있으며(CERNET, 2025), 국가기록물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연구기록물의 처분 지침을 운영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부합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미국, 영국, 호주, 중국의 12개 연구중심대학은 공통적으로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바탕으로 방대한 연구기록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공식적인 처분지침을 명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비교분석에 적합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상의 논거를 바탕으로 선정된 국가별 주요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각국 주요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현황

국가명	대학명	처분지침명	제개정 연도	제정부서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UW-Madison)	연구 분야 기록물 보유일정 (Records Retention Schedules for UW-Madison Research)	2013~	대학아카이브 및 기록관리 부서
	텍사스오스틴 (UT Austin)	기록물 보유일정(연구) (University Texas Records Retention Schedule 8.1)	2012/2024	기록정보관리 서비스
	캘리포니아대학시스템 (UC 시스템)	UC 기록물 보유일정(12. 연구관리기록물) (UC Records Retention Schedule 12. Research Administration Records)	2018/2023	UC 총장실 산하 기록관리부서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KCL)	기록물 보유일정(D. 연구 영역) (Records Retention Schedule Section D: Research)	2022/2026	경영보증과
	유니버시티컬리지런던 (UCL)	연구데이터에 관한 보유일정 (Records Retention Schedule for files relating to research data)	2016/2021	기록관리실
	케임브리지 (CAM)	기록물 관리 실무 지침 및 마스터 기록물 보유일정(4. 연구) (Statement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 and Master Records Retention Schedule)	2013/2021	정보준수사무국
호주	호주국립대 (ANU)	연구&개발 기록물 처분권한서 (Research & Development Records Authority)	2007	학술정보서비스의 대학기록부서
	멜버른대 (UoM)	대학 기록물 보유 및 처분권한서(11. 연구) (University Records Retention and Disposal Authority, 11. Research)	2024	기록정보팀
	뉴사우스웨일즈대 (UNSW)	연구데이터 및 기록물 보유기간 가이드 (Retention periods for research data and records guide)	2017/2025	기록 & 아카이브
중국	칭화대 (THU)	칭화대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규정(清華大學科學技術研究檔案管理辦法) 칭화대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시행세칙(清華大學科學技術研究檔案管理實施辦法)	2025	대학 당안관
	난징대 (NJU)	난징대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규정(南京大學科學技術研究檔案管理辦法) -난징대연구당안귀檔범위보관기한(南京大學科研檔案歸檔範圍和保管期限)	2021	대학 당안관
	저장대 (ZJU)	저장대당안관리규정(浙江大學檔案管理辦法) 저장대입권부문당안귀檔범위보관기한규정(浙江大學立卷部門檔案歸檔範圍和保管期限規定)	2021 2025	대학 당안관

2.2 분석 틀 설정

본 연구는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분석하여 국가별 제도적 배경에 따른 지침의 구조적 특징과 운영 체계를 살펴보고 비교·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중국의 주요 대학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문헌 기반의 비교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대학의 처분지침이 어떠한 구조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둘째, 연구기록물의 평가 시 적용되는 핵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셋째, 연구기록물 및 연구데이터가 어떠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처분되는가?

분석 자료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각 대학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최신 처분지침 중 ‘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처분지침’은 ISO 15489-1:2016의 정의를 준용하여 지침에 기술된 기록물에 대해 승인된 처분행위를 규정한 통제도구를 의미한다(ISO, 2016). 이는 기록물의 보유기간과 처분 조치를 결정한 산출물로서 생산기관이 영구 보존 기록물을 이관하거나 한시 기록물을 파기할 수 있도록 부여된 법적 권한의 성격을 갖는다(한국기록학회, 2018). 국가별로 Records (retention) Schedule, Disposal Authority 등 지칭하는 용어에 차이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처분 일정이 주로 정책문 형식으로 제·개정되며 규정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처분지침’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다만, 개별 대학의 사례를 논의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고유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수집한 해외 대학의 처분지침은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원문의 정확한 분석과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적으로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하였다. 이후 번역 결과를 원문과 대조하며 용어와 의미를 재검토하였다. 특히 영미권의 ‘records’와 중국의 ‘당안’(档案)은 모두 조직 활동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제도적 범위와 관리 체계에서 차이가 있다. ‘records’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되는 기록물 전반을 의미하는 반면, 중국의 ‘당안’은 업무가 완료된 후 귀당(归档) 절차를 거쳐 보존 대상으로 확정된 기록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의 일관성과 독자의 이해를 위해 문맥에 따라 당안을 ‘기록물’로 번역하되, 중국 기록관리 제도의 특수성과 개념적 차이를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과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의 연구자가 교차 검토를 수행하였다.

3장에서는 처분과 관련된 ISO 15489-1:2016과 ISO/TR 21946:2018의 핵심 조항들을 분석지표로 매핑하여, 대학의 처분지침을 구조적·내용적·운영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ISO, 2016; 2018).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는 처분지침의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ISO 15489-1:2016에서 규정한 분류체계(9.4)와 처분지침의 구성요소(8.5)를 준거로 삼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침이 연구기록물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전용형/통합형)와 적용범위(단일 캠퍼스/복합 캠퍼스)를 기준으로 대학별 처분지침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는 ISO/TR 21946:2018의 기록 요구사항(5.11)을 준거로 연구기록물의 유형과 보유기간 책정 근거를 검토하고 기록 유형별 평가기준에 반영된 세부 요구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ISO/TR 21946:2018의 행위 주체의 식별(5.9), 승인 절차(4), 처분결과의 문서화(6.4) 조항을 분석지표로 활용하여 처분제도의 실행 체계와 책임성 확보 방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처분지침의 승인 체계와 책임 주체를 주요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여, 해당 지침이 대학의 기록관리 거버넌스 체계에서 처분제도의 실행력과 책임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앞서 도출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별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의 보편적 흐름과 기관별 특수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각 지침이 국제표준의 원칙 및 요건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3장에서 활용한 처분지침의 구조내용·운영적 측면의 분석 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국내 대학 실정에 맞는 연구기록물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분석

3.1 미국

<표 2>는 미국 3개 대학(UW Madison, UT Austin, UC System)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 내용,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한 것이며,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 미국 3개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종합 비교

분석지표		UW Madison	UT Austin	UC 시스템
구조	유형	전용 단일형	통합 단일형	통합 복합형
	구성요소	- 일정번호, 제목, 설명, 보유이벤트 및 기간, 처분방식(6개 요소) - 개인정보식별, 기밀여부, 일몰일(추가)	- 식별번호, 기록시리즈명, 설명, 보유기간, 조치사항, 법적 근거(6개 요소)	- 식별번호, 기능(설명), 범주, 기록 예시, 보유기간, 기밀여부, 기타 정보(5개 요소)
	분류체계	5개 범주(시리즈 단위)	7개 범주(시리즈 단위)	6개 범주(버킷 단위)
내용	평가기준	- 연방법 및 위스콘신 주법 -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과 지침 - 위스콘신대학시스템의 GRS	- 연방법 및 텍사스 주법 -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과 지침 - 텍사스대학시스템의 GRS	- 연방법 및 캘리포니아 주법 - UC 계약·연구비 매뉴얼 -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약조건
	기록유형 및 보유기간	- 연구비 관리 및 계약(15년) - 연구 부정행위 및 이해충돌(3년) ※ 사건기록(6~7년) - 연구데이터(7년) - 연구용 동물(일반: 3년, 영장류 75년) - 인체 기증 프로그램(30년)	- 연구비 관리 행정 및 연구지원금 최종 보고서(7년) - 연구부정행위 및 이해충돌 관리(7년) - 연구데이터	- 연구계약(6년) - 연구윤리준수(6~7년) ※ 인간대상연구(10년) - 줄기세포 연구기록(영구) - 해부학적 기증/자료 프로그램(30년)
	처분조치	일반폐기, 기밀폐기, 보관	대학 아카이브 보관, 아키비스트 검토	일반폐기, 보안폐기, 대학 아카이브 보관
	승인체계	위스콘신 주 공공기록위원회(PRB)의 승인과 10년 주기 갱신	TSLAC로부터 3년마다 재인증	대학기록관리위원회의 승인과 현지 판단
운영	처분절차	연 2회 주 기록센터를 통한 처분	5단계 처분 프로세스	‘현지 판단’ 과정 중시
	핵심주체	공공기록관리자	기록관리책임자	기록관리 코디네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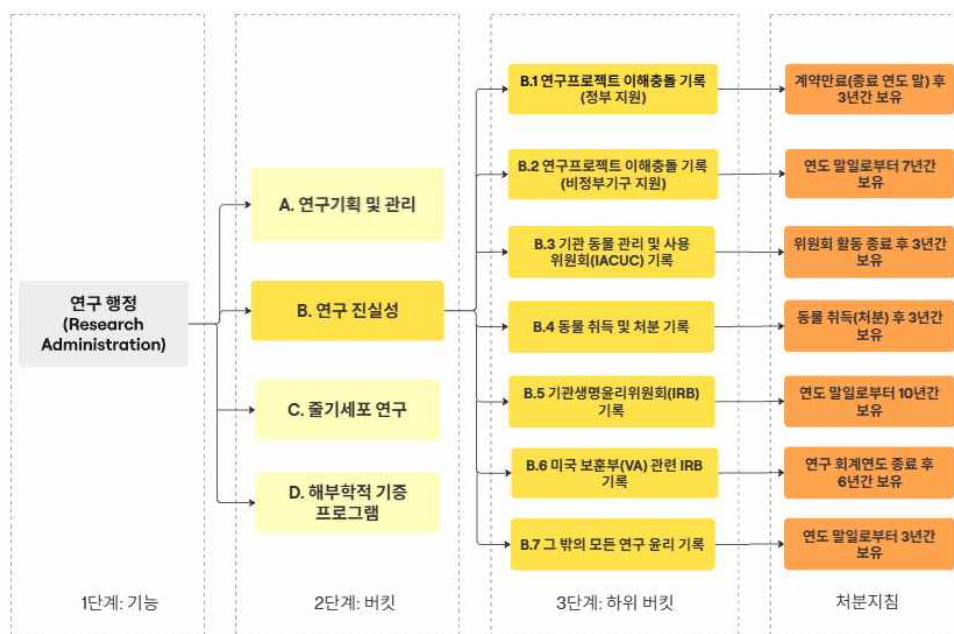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미국 3개 대학은 주(州) 기록법과 대학 시스템의 공통 일정을 토대로 각 대학의 실무에 맞춘 자체 보유일정을 수립하며, 시리즈(Series)를 기반으로 한 기능별 분류체계를 적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보유일정의 세부 설계 방식과 적용 범위는 대학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UW Madison은 위스콘신 주 기록법을 기반으로 업무 기능에 따른 개별 보유일정을 수립하되, 연구 기능에 대해서는 세부 기능별로 각각 개별 보유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특히 연구 기능에 대한 보유일정에는 필수 구성요소 외에 개인정보보호 식별(PII), 기밀여부, 효력상실일(Sunset Data)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UW Madison, 2013). 반면, UT Austin은 대학의 전반적인 기능을 아우르면서 단일 캠퍼스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통합 단일형 보유일정을 수립하였다. 보유기간을 AC(이벤트 종료 후), AV(행정적 가치 소멸) 등 7가지 표준 코드로 범주화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체 식별번호(UT Item)를 주 정부 항목(State Item)과 연동함으로써 주 정부의 ‘최소 보유지침’을 준수하며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지원한다(UT Austin, 2024).

UC 시스템은 앞선 두 대학과 달리 전체 캠퍼스에 일괄 적용되는 복합형 보유일정을 수립하였다. 2013년 8월, 기존의 개별 지침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시스템 일정을 발효했으며 모든 사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재구축하였다(UCOP, 2016). 특히 이 일정은 개별 시리즈를 상세히 나열하는 대신 광범위한 업무 범주를 묶어 관리하는 ‘빅 버킷(Bucket) 2)체제’를 기반으로 하며, 해당 버킷에 포함된 기록물 중 가장 긴 보유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최대 보유기간 원칙’을 구조적 메커니즘으로 삼고 있다. 다만,

이 원칙이 하위 버킷의 절대적 종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문서화된 승인 절차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독자적인 예외 기간을 허용한다(Saffady, 2018).

예컨대 <그림 1>을 살펴보면 연구 진실성 관련 기록물을 다루는 ‘버킷 B’는 총 7개의 하위 버킷으로 구성되어 있다. 빅 버킷 체계의 기본 원칙에 의하면 가장 보유기간이 긴 하위 버킷의 기준에 따라 나머지 버킷에 보유기간이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보유일정을 분석한 결과, 각 하위 버킷은 개별 법률적 근거와 지침에 따라 저마다 다른 보유기간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각기 다른 연구 분야 및 과제의 성격으로 인해 개별 법령 준수가 필수적인 연구기록물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결과적으로 UC 시스템은 최대 보유기간 원칙의 틀 안에서 연구기록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인 예외 기간을 폭넓게 허용하는 유연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UC 시스템 연구행정 기능에 대한 버킷 구조도(UCOP, 2023)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미국 3개 대학은 상위 법령 및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을 평가기준의 근간으로 삼는 동시에, 연구 계약 조건에 별도의 처분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아울러 순수 연구 자료는 제외하고 대부분 연구 행정 및 규정 준수 기록물을 중심으로 보유일정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대학별 보유일정에 나타난 연구기록물의 주요 유형과 평가기준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UW Madison은 연구지원금 관련 기록물에 대해 통상적인 연방 기준(5~7년)을 크게 웃도는 15년의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연구지원금이 대학 운영을 위한 핵심 재원이며 향후 후원기관의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고유의 업무상 필요성을 처분지침에 적극 반영한 결과이다(UW Madison, 2013). 다음으로 일반적인 연구 윤리 기록물은 6~7년간 보유하는 반면, 인간 대상 연구 윤리 기록물의 경우 피실험자의 권리 보호 및 임상시

- 2) 버킷 체계로 전환되는 이론적 실무적 배경은 Saffady(2018)의 연구에서 명확히 확인된다. Saffady는 미국 내 주요 기관의 기록관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세분화 된 시리즈 체계가 현업 직원들이 이해하기 너무 복잡하고 디지털 시스템과의 연동 및 자동 폐기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방 규정과 주 법이 복잡하게 얽힌 환경일수록 최대 보유기간 원칙을 결합한 빅 버킷 모델을 도입하여 범주 내 최장 법적 기한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대학의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메커니즘임을 규명하였다.

험의 장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구 종료 후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UCOP, 2023). 아울러 UW Madison의 영장류 관련 기록물(75년), UC 시스템의 줄기세포 연구(영구) 및 인체 기증증서(30년) 등 생명 윤리와 직결된 민감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장기 보존 체계를 취하고 있다. 한편 UT Austin은 연방 및 주 정부 보조금이 아닌 기타 재원으로 수행되는 일상적 연구 활동에 관한 기록물에 한하여 연구데이터 보유일정을 수립하였다. 해당 항목에 ‘AV’(행정적 가치) 코드만 부여한 것으로 보아 UT Austin이 법적·제도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이터 유형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마련했음을 알 수 있다(UT Austin, 2024).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미국 3개 대학은 학내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책임자가 보유일정을 총괄 조정하며 폐기의 적정성을 감독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반면, 보유일정의 승인 체계와 폐기 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기관별 뚜렷한 차별성이 나타났다.

UW Madison과 UT Austin은 처분지침의 운영에 있어 주 정부의 직접적인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다. UW Madison은 위스콘신 주 공공기록위원회(PRB)의 승인을 통해 10년 주기로 일정을 갱신하며(UW Madison, n. d.), UT Austin은 텍사스 주립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위원회(TSLAC)로부터 3년마다 보유일정의 재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UT Austin은 폐기 집행 시 ‘공식요청-심사-승인-폐기-완료보고’의 5단계 프로세스를 정형화하고 있으며, 승인 후 90일 이내 폐기를 집행하고 폐기 후 5일 이내에 최종 보고를 마쳐야 하는 등 분석 대상 기관 중 가장 엄격한 처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UT Austin, 2022). 이와 달리 UC 시스템은 내부 기록관리위원회가 자체적인 승인권을 행사하는 독립적 거버넌스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처분 집행 시 각 캠퍼스별 기록관리 코디네이터와 현장 실무자의 ‘현지 판단’(Local decision)에 기반하여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분권형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UCOP, 2016).

3.2 영국

<표 3>은 영국 3개 대학(KCL, UCL, CAM)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 내용,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영국 3개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종합 비교

구분		KCL	UCL	CAM
구조	유형	통합 복합형	통합 복합형	통합 복합형
	분류체계	16개 범주(기록 기술 단위)	2개 범주(레코드 그룹)	3개 범주(기록 기술 단위)
	구성요소	항목번호, 기록 기술, 담당부서, 근거 법령, 보존규칙, 이관여부, 정보분류 등(7개 요소)	항목번호, 레코드그룹, 예제, 트리거, 보유기간, 인용근거(6개 요소)	기록 기술, 보유기간, 조치사항
내용	평가기준	데이터 보호법, 자금 지원기관의 지침, JISC의 기록보유일정 참조모델, 기관 요구사항 등	데이터 보호법, 영국 및 EU 법정 지침, JISC의 기록보유일정 참조모델, DCC 평가모델 등	데이터 보호법, 자금 지원기관의 지침, JISC의 기록보유일정 참조모델, 기관 요구사항 등
	기록유형 및 보유기간	- 연구 거버넌스 및 성과관리 - 연구 프로젝트 및 업무관리 - 연구윤리 및 부정행위(6년) - 연구데이터(최소 10년) ※ 임상시험데이터(최소 25년)	- 연구데이터(최소 10년) ※ 임상시험데이터(15년), 첨단치료제 관련(최대 30년) - 행정 및 품질관리	- 연구 품질 및 거버넌스 - 연구 프로젝트 개발 및 관리(6년) - 연구 상용화(12년)
	처분유형	대학 아카이브 이관, 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 이관, 보안폐기	폐기, Records Office로 이관	대학 아카이브 이관, 대학 정기간행물 부서 이관, 폐기, 아카이브 검토
운영	승인체계	대학 집행부 최종 승인과 상시 검토	도서관 위원회의 의결과 상시 검토	5년 주기 검토
	처분절차	가치평가 및 처분결과의 문서화	가치 평가 및 처분결과 문서화(보유일정표에 Review 명시)	가치평가 및 처분결과의 문서화
	핵심주체	대학기록관리팀	대학 구성원 전체	정보준수사무국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영국 3개 대학은 합동정보시스템협의회(JISC)의 표준 모델에 기반하여 통합 복합형 보유일정을 수립하고 동일한 유형의 기록물 집합을 처분 단위로 삼는 기능별 분류체계를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보유일정의 세부 설계 방식과 구성 항목 등에 있어서는 대학별 차이가 드러났다.

KCL의 보유일정³⁾은 대학의 ‘정보 분류’(Information Classification) 항목을 반영하여 보안 등급에 따른 접근 통제 요소를 통합 관리하는 구조적 특징을 취한다. 대학 내 모든 정보는 민감도에 따라 외부(External), 내부(Internal), 제한(Restricted), 매우 제한(Highly Restricted)의 4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정보 보안, 기록물 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지원한다(KCL, 2026). UCL은 처분시점의 기준이 되는 트리거(Trigger)⁴⁾ 항목을 보유일정의 독립된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산정의 기반이 되는 법적 인용(Citation) 근거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CAM의 보유일정은 기록물 기술, 보유기간, 처분 조치의 3개 항목만으로 구성된 단순한 프레임워크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학내 전체 조직에 적용할 최소한의 표준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하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아울러 이 일정의 적용범위는 본부 소속의 행정 및 학술기구로 제한되며,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별 컬리지(Colleges)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CAM, 2021).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영국 3개 대학은 JISC의 「고등교육 기록물 평가지침(2007 guidance on archival appraisal for higher education)」을 준용하여 잠재적 가치와 위험에 따른 다각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연구기록물을 평가할 때 연구 증거에 대한 접근성 부재 시 발생하는 위험, 기록물 보존에 따른 편익, 장기 보존 및 접근 비용 등 실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특허나 지식재산권의 확보 여부, 연구 부정행위 의혹과 같은 조사 및 수사와의 관련성, 해당 연구의 혁신성이나 사회적 논란 여부 등도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JISC, 2025).

이와 함께 2018년 도입된 「데이터보호법(DPA)」과 「일반데이터보호규정(UK GDPR)」은 영국 대학들이 보유일정을 수립하는 데 강력한 법적 규제력을 행사하고 있다. UK GDPR 제5조 제1항 (e)호에 규정된 ‘보유기간 제한 원칙(Storage Limitation Principle)’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만 보존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규정 제83조 제5항 및 「데이터보호법」 제157조에 따라 각 대학에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ICO, 2024). 이에 따라 영국 대학들은 기록물을 적정 시점에 안전하게 파기하고 이를 입증하는 규제 준수의 관점을 보유일정 수립 시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동시에 자체 보유일정에 명시된 표준기간보다 개별 연구 협약 및 외부 지원기관의 계약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을 공통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연구 현장의 실무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학별 보유일정에 나타난 연구기록물의 주요 유형과 평가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KCL의 경우 연구 윤리 및 부정행위 관련 사건 파일에 대해 6년간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프로젝트의 보유기간이 이를 초과할 때는 해당 기록물을 종료 시점까지 보유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회의별 공식 자료 일체를 기록관리 전담부서로 이관하도록 하는 별도의 기관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연구데이터 유형은 일반적으로 UKRI 오픈 리서치 협약에 따라 연구 종료 후 최소 10년간 보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연구데이터의 구체적인 보유기간과 관리 기준은 자금을 지원하는 각 기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규정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만 임상시험 데이터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비하고자 타 연구보다 장기간 보존을 필수화하여 최소 25년의 보유기간을 규정하고 있다(KCL, 2026).

3) KCL은 이와 별개로 연구윤리준수사무국이 주관하는 ‘연구데이터 보유일정(Schedule of Retention Periods for Research Data)’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 보유일정은 일반적인 행정 기록물 중심의 지침과 달리 연구 시험의 유형, 연구자 유형, 윤리 승인 여부, 연구 결과의 보급, 보유 책임 등 연구 활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다만 해당 일정은 연구데이터라는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어 연구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4) 기록관리 분야에서 ‘트리거’는 보유기간 산정 시점을 유발하는 특정 사건이나 조건을 의미한다. 호주뉴질랜드기록관리협회(ADRI)는 이를 ‘보유기간이라는 시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도록 만드는 사건’으로 정의하며 업무의 종료, 계약 만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Australasian Digital Recordkeeping Initiative, 2012).

UCL 역시 통상적 진료 범위를 초과하는 방사선 조사나 외과적 절차가 수반된 데이터는 시험 종료 후 15년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첨단치료제 관련 데이터의 경우 약물의 장기적 안정성 보장을 위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CL, 2021). 아울러 UCL은 연구데이터의 선별 과정에서 디지털 큐레이션 센터(DCC)의 ‘데이터 평가 모델’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데이터 평가 시, <표 4>와 같이 기관 임무와의 관련성, 법적 지침 준수 여부, 데이터의 독창성 및 고유성, 재현 가능성 및 재추정 비용의 경제성, 생산 맥락을 증명하는 문서의 완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CL, n.d; Whyte & Wilson, 2010).

<표 4> UCL의 연구데이터 평가기준 체크리스트

평가기준	체크리스트
임무와의 관련성	해당 데이터가 자금 지원 기관 또는 연구기관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가? 법적 요건이나 지침이 있는가?
독창성	데이터가 기존 작업과 중복되는가? 아니면 고유한가?
재현 가능성	해당 데이터를 복제, 재구성, 재추정 할 수 있는가? 그 비용은 재정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수준인가?
경제적 타당성	데이터 보존에 드는 총 비용을 고려하는가?
완전한 문서화	데이터 생산 맥락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있는가? 지식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또는 윤리적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문서화 되어 있는가?

한편, CAM의 경우 연구 상용화 관련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 투자 계획 등에 관한 기록물은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기간과 잠재적 소송 가능성을 고려하여 서명일로부터 12년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례보고서와 같은 최종 연구 산출물은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여 대학 도서관 정기간행물 부서로 이관하며, 대학의 자체 디지털 아카이브인 ‘아폴로’(Apollo)를 통해 영구 보존한다(CAM, 2021).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영국의 3개 대학은 기록관리 및 정보준수 전담부서가 보유일정을 수립·조정하며, 보유기간 만료 시 대학 아카이브의 가치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통제 장치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보유일정의 승인 체계 및 권한 방식에 있어서는 기관별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KCL은 대학기록관리팀이 보유일정을 수립하고, 대학 집행부(University Executive)의 최종 승인을 받는 중앙 집중형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된다(KCL, 2019). UCL은 도서관 서비스 산하의 전문 심의 기구인 도서관 위원회(Library Committee)의 의결을 거쳐 보유일정을 최종 승인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아울러 UCL은 기록물 관리를 ‘모든 직원의 의무’로 명시하는 보편적 책임 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록물을 생산관리하는 개별 직원이 1차적인 처분 집행의 주체가 된다(UCL, 2022). CAM은 대학의 법적 위험 관리와 규제 준수를 총괄하는 정보준수사무국(Information Compliance Office)에서 대학 전체의 마스터 보유일정을 수립·발행한다. 해당 일정은 「데이터보호법」 및 「정보공개법」 등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처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법률적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5년 주기의 정기적 검토 및 개정 절차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CAM, 2021).

3.3 호주

<표 5>은 호주 3개 대학(ANU, UoM, UNSW)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 내용,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호주의 3개 대학은 설립 근거에 따라 「연방기록법」 또는 「주 기록법」을 준수하며, ‘기능(Function)-활동(Activity)-클래스(Class)’로 구성된 3단 계층구조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각 대학이 적용받는 법적 관할권과 내부 정책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났다.

〈표 5〉 호주 3개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종합 비교

구분		ANU	UoM	UNSW
구조	유형	전용 단일형	통합 복합형	전용 복합형
	분류체계	34개 범주(클래스 단위)	7개 범주(클래스 단위)	5개 범주(클래스 단위)
	구성요소	식별번호, 기록 내용 기술, 처분행위	기능(활동), 기록 내용 기술, 조치사항	기록유형, 기록 내용 기술, 보유기간, 근거 법령
내용	기록유형 및 보유기간	- 연구계약 및 합작투자, 상용화, 연구설계 등: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영구) - 지식재산권(조치 후 20년, 특허 만료 후 3년 등)	- 계약 및 상용화, 합작투자, 연구데이터 관리: 국가적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영구) - 보조금 관리(2년~7년) - 표본 및 동물관리: 표본의 추적 관리(영구), 유전자 변형 생물체 관련(8년) 등	- 연구데이터: 유전자 치료 등(영구), 임상시험(15년) - 윤리위원회: 인간 대상(15년), 생물 안전윤리(10년) - 지식재산권: 계약 체결(70년) - 연구 보고 및 연구 행정: 오염부지 영향 평가 등(70년)
	평가기준	- 연방기록법 1983(Archives Act 1983) - 호주 책임있는 연구 윤리 강령 - 연방 연구기금 지침 등	- 공공기록법 1973(Public Records Act 1973) - 호주 책임있는 연구 윤리 강령 - PROS 16/07(고등교육), PROS 07/01(일반행정) 등	- 주 기록법 1998(State Records Act 1998) - 호주 책임있는 연구 윤리 강령 - GA 47(고등 및 추가 교육), GA 28(행정) 등
	처분유형	보안폐기, NAA이관	임시 기록물 보관, 폐기, 영구기록물 이관	보안폐기, 대학 아카이브 이관
	승인체계	호주 국가기록원의 승인	빅토리아 주 기록원의 승인	뉴사우스웨일즈 주 기록원의 승인
운영	처분절차	NAP 적용	식별,NAP 적용	NAP 적용
	핵심주체	대학기록관리팀	기록&정보 부서	기록&아카이브 부서

ANU는 연구 기능에 대해 별도의 전용 처분권한서를 수립하고 있으며, 연방 공공기관으로서 호주 국가기록원(NAA)의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연구 및 개발’(Research & Development) 기능을 위한 전용 처분권한서를 NAA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연방기록법」에 근거하여 클래스 단위로 NAA 이관 여부, 최소 보유기간, 만료 후 폐기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ANU, 2007). 이와 달리 UoM과 UNSW는 주 정부의 표준을 토대로 자체 처분권한서를 수립한다. 우선 UoM은 빅토리아 주 기록원(PROV)의 고등교육 표준 지침을 기반으로 전 기능을 포괄하는 처분권한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개편하여 제공하고 있다.⁵⁾ 반면 UNSW는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의 대학 공통 처분지침인 GA47(General Retention and Disposal Authority: Higher and further education)을 준수하며, 연구 기능에 대해 별도의 전용 처분권한서를 두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나아가 UNSW는 15개 정보 지침을 통합한 ‘정보 거버넌스 정책’을 수립하여 대학 내 모든 정보를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기관 전체의 정보 관리 준법 체계 내에서 연구기록물이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UNSW, 2025b).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호주 3개 대학은 주 기록법 및 표준을 비롯하여 연구 분야별 법령과 지침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 차원의 연구 윤리 강령과 각 주 정부의 고등교육 표준 지침이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특히 이들 대학은 기록물의 역사적·사회적 가치와 책임 이행 여부 등을 주요 평가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중요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서나 유전자 치료 관련 데이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데이터는 NAA 및 대학 아카이브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UNSW는 주 기록법과 「호주 책임있는 연구 윤리 강령」⁶⁾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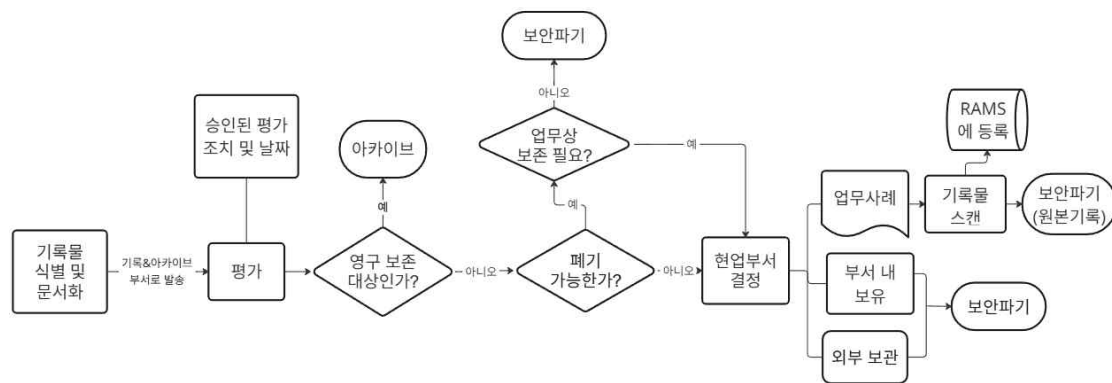
5) UoM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 ‘보존 및 폐기권한서 롤업 프로젝트’(Retention and Disposal Authority Roll-Up project)를 통해 파편화된 처분기준을 통합하고, 이를 검색 가능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개편하였다. 특히 업무시스템을 통한 기록물 생산이 보편화됨에 따라 처분규칙의 복잡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사적 분류체계(Enterprise classification scheme)를 도입하여 클래스의 수를 1,345개에서 356개로 대폭 간소화하였다(UoM, n.d.b).

6) 호주 연구위원회(ARC)와 국립보건의료연구위원회(NHMRC)가 공동 발행한 지침으로, 연구데이터의 최소 보유기간(일반연구 5년, 임상연구 15년 등)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이드라인이다.

기준을 비교하여 더 긴 보유기간을 적용하도록 명시한다. 예컨대 소아 대상 임상 연구기록물의 경우, 주 기록법에 제시된 ‘피험자가 25세에 도달하는 시점’과 윤리 강령이 제시한 ‘연구 완료 후 최소 15년’이라는 두 가지 기준 중 가장 늦은 시점에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더 긴 보유기간을 최종 채택하는 방식을 취한다. 아울러 UNSW는 「환경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존법」에 의거 오염 부지 관련 환경·문화유산 영향 평가 및 복원 조치 기록물 등을 조치 완료 후 최소 75년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 관리와 사회적 책임 이행 확보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UNSW, 2025a).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호주 3개 대학은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주도하에 NAA 및 주 기록원의 법적 승인을 받아 보유일정을 수립·갱신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보유기간 만료 전, 행정적 가치가 낮거나 단기적인 임시 기록물을 공식 허가 절차 없이 즉시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일반 업무 관행(Normal Administrative Practice, 이하 NAP)’ 원칙을 공통적으로 적용한다(NAA, n.d.). 아울러 처분 집행 전 동결 여부를 검증하고, 최종 처분 내역을 문서화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대학별 세부 승인 체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차별화된다.

ANU는 대학기록팀이 처분권한서 초안 작성과 내부 검토를 주도하며, 최종 법적 효력은 NAA의 승인을 통해 확보한다. 다만 공식 업무시스템 외의 환경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처분은 대학 도서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ANU, 2022). 또한 처분 집행 전 소송이나 감사 등의 법적 동결 사항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NAA가 권고하는 5대 폐기 기준(승인 여부, 파기 방법의 적절성, 보안·기밀 여부, 적시성, 문서화)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UoM은 빅토리아 주 기록원의 승인을 바탕으로 ‘식별-NAP 적용-판정-처분 집행’의 4단계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한편 보유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은 학내 4급 이상 보직자의 최종 승인을 거쳐 폐기되며, 영구 보존 기록물은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과도기적 관리를 거쳐 대학 아카이브로 최종 이관된다(UoM, n.d.a). UNSW 역시 주 기록원의 법적 승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나, 전담부서인 기록&아카이브 부서의 선임 책임자가 대학 전반의 기록물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을 행사한다. 처분권한서는 10년 주기의 전면 재검토 및 갱신을 원칙으로 하며, <그림 2>와 같이 기록물 평가를 특정한 사후 행위가 아닌 일상적 업무 활동과 연계하여 상시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NSW, 2017).



〈그림 2〉 UNSW의 기록물 평가 워크플로우

3.4 중국

<표 6>은 중국 3개 대학(THU, NJU, ZJU)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 내용, 운영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비교한 것으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중국 3개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종합 비교

구분	THU	NJU	ZJU
구조	유형: 전용 복합형 분류체계: 3개 범주(연구과제별) 집중귀당, 자체귀당, 기타귀당 구성요소: 이관대상 범위, 보유기간	전용 복합형 연구 생애주기별 이관대상 범위, 보유기간	통합 복합형 5개 범주 조직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혼재 이관대상 범위, 보유기간
내용	기록유형 및 보유기간: -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등(영구) - 청년과학기금, 국제 협력 프로젝트(30년) - 일반 프로젝트(10년) 평가기준: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과학기술당안관리규정 처분유형: 폐기, 대학 당안관 이관	- 수상 및 특허증서(영구) - 연구계획서, 진행 및 최종보고서, 과학 기술 포상 신청서, 연구 결과 인용 등(30년) - 예비 연구보고서, 기술공정보고서, 국내외 학술 교류 등(10년)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과학기술당안관리규정 폐기, 대학 당안관 이관	- 연구행정기록(KY11): 연구 기구의 설립, 계약 및 협약서 등(영구) - 프로젝트기록(KY12): 국가 과학 기술 중대 프로젝트(영구), 각종 정부자금 프로젝트(30년) - 특허증서(KY13)(영구) - 포상기록(KY14)(영구) - 측량도면(KY15)(영구)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과학기술당안관리규정 폐기, 대학 당안관 이관
운영	승인체계: 대학 지도부(교무회의, 당위원회) 처분절차: 이관, 감정, 폐기 승인, 집행, 사후관리 핵심주체: 대학 당안관 및 연구 담당 부서	대학 지도부(교무회의, 당위원회) 대상 선별, 감정, 명부작성, 최종 승인 대학 당안관, 당 서기	대학 지도부(교무회의, 당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감정 소조) 심의 대학 당안관

첫째, 구조적 측면에서 중국 3개 대학은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및 「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규정」⁷⁾을 최상위 규범으로 삼아, 보존 대상의 범위와 보유기간을 명시하는 구조적 통일성을 보인다. 또한 국가 차원의 통일된 분류규범인 「고등교육기관 당안실체분류법」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한다. 특히 중국 대학들은 연구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업무 프로세스와 기록관리의 완전한 통합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연구 프로젝트 자체가 실질적인 처분 및 분류의 기본 통제 단위가 된다. 즉,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부터 결과 보고에 이르기까지 산출되는 모든 문서를 하나의 묶음(set)으로 통합하여 기록물의 맥락을 보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만 이러한 통일성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체 규정 내에 처분사항을 체계화하는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일정 부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THU는 별도로 제정된 연구기록물 관리 규정을 통해 보유기간별 대상 기록물 등의 처분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기록물 전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연구과제의 중요도와 주체에 따라 국가 중대 과제나 핵심 성과물을 대학 당안관에서 영구 보존하는 ‘집중 귀당’(集中 归档), 일반적인 연구과제나 각 단과대학이나 연구소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체 귀당’(自行 归档), 부속기관이나 특정 목적의 소규모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귀당’(其他 归档)으로 구분한다(THU, 2025a; 2025b). NJU 역시 연구기록물 관리에 대한 별도 규정을 수립하였으며 연구 생애주기에 따라 준비, 실험, 검수, 성과, 홍보의 5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연구기록물의 유형과 보유기간, 보관장소를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비교란에 ‘암호화 조치 적용 여부’를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 통제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NJU, 2021b).

반면 ZJU는 연구기록물에 대한 개별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대학 전체의 통합적 기록물 관리 규범인 「저장대당안관리규정」을 통해 기록관리 범위를 생산 부서별로 구조화하여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ZJU는 상위 분류규범을 반영한 자체 「당안실체분류규정」에 근거하여 과학연구분야 분류코드(KY)를 기준으로 KY11

7) 중국은 2020년 「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규정」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1987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현 과학기술부)와 국가당안국이 공포한 「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집행규정」이 약 33년간 실질적인 법적 근거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0년 새롭게 발효된 현행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기존 집행규정을 전면 대체하였으며, 전자당안관리 체계를 정립하고 연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당안 관리 강화를 핵심적인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SAAC, 2020).

(연구행정), KY12(연구 프로젝트), KY13~15(연구 성과 및 결과) 와 같이 연구 생애주기 전 과정에 따른 처분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ZJU, 2021; 2025).

둘째, 내용적 측면에서 중국 3개 대학은 프로젝트의 중요도와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적으로 중대한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영구 보존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다. THU와 ZJU는 국가 중점 연구개발 계획 및 중대 프로젝트, 수상 기록물 등을 영구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각종 정부 기금 및 국제 협력 프로젝트는 30년의 보유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NJU는 ‘자료의 내재적 가치’와 ‘사회적 활용 가치’라는 두 가지 축을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표 7>과 같이 연구 성과 단계의 수상 및 특허증서는 기록물 자체의 원본성과 증거력을 인정하는 내재적 가치를 반영하여 영구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각 연구 단계별 계획서 및 보고서, 기술이전 계약 관련 기록물 등은 연구 종료 후에도 후속 연구 활용이나 산업적 적용을 위한 사회적 활용 가치를 고려하여 30년의 보유기간을 적용하고 있다(NJU, 2021b).

<표 7> NJU의 연구 생애주기별 보유기간에 따른 기록물 유형

구분	준비	실험	승인	성과	홍보
영구				수상자료(증서) 특허증서 원본	
30년	연구비신청 연구계획서 계약서	연간진행보고서 프로젝트 계획조정 실험, 관찰, 조사 등 원본기록물 시험보고서	최종 연구보고서 프로젝트 완료 증명서 주요 회의자료 논문 및 단행본	과학기술 성과상 신청서	연구결과인용 외부평가자료 기술이전계약/협약
10년	예비 연구보고서	데이터 처리 재료	기술 공정 보고서 사용자 설명서	특허 출원을 위한 기초자료	국내외 학술 교류 분석자료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 중국 3개 대학은 보유일정에 기반하여 기록물을 평가할 때, 부서 간 협업과 전문가 심의를 거친다는 공통적인 운영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대학 당안관이 처분지침의 수립을 주도하되, 연구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무적 타당성을 확보한다. 특히 개별 부서의 독단적인 기록물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 대학 당안관과 연구 담당 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한 폐기 집행 시에는 양 기관이 반드시 현장에 공동 입회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사후 증빙을 위해 폐기 명부를 작성하여 각 부서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분 전 과정에 걸쳐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 3개 대학 모두 교무회의나 당 위원회 등 대학 최고 집행부의 공식 승인 절차를 거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자체 규정을 살펴본 결과, 실질적인 처분 승인의 핵심 주체와 강조점은 다르게 나타났다. NJU는 「난징대당안관리규정」 제21조에서 대학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학교 ‘당 위원회 서기’(党委书记)가 기록물 폐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법·정치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NJU, 2021a). 이와 달리 ZJU는 폐기가 확정된 문건에 대해 학교 집행부를 대표하는 업무담당 부총장(分管校领导)의 서면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여, 행정 실무적인 책임 검증과 통제 절차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ZJU, n.d).

4. 해외 대학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비교 및 시사점

앞서 분석한 미국, 영국, 호주, 중국의 12개 연구중심대학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적, 내용적, 운영적 측면

에서 종합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각 대학의 처분지침은 자국의 고유한 법제와 대학별 거버넌스에 따라 다변화된 유형과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국 대학이 처분지침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실무적 매커니즘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4장에서는 해외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이 기록관리 국제표준의 핵심 요건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한편, 처분지침에 나타난 보편적 흐름과 국가별 특수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8> 국가별 연구기록물 처분지침 비교 분석 종합표

구분	국제표준	미국	영국	호주	중국
구조	ISO15489-1:2016 • 매체 독립적 통제 • 업무 기능에 기반한 분류 체계(9.4) • 공통 구성요소(8.5) - 식별자, 기록물 기술, 보유 기간, 처분행위 등	• 전용 단일, 통합 단일, 통합 복합형 지침의 혼재 • 시리즈, 버킷 기반의 기능별 분류 • 식별번호, 기록물 기술, 보유기간, 처분행위 등	• 통합 복합형 • 기능별 분류체계 • 식별번호, 기록물 기술, 보유기간, 처분행위, 근거 법령 등	• 전용 단일, 통합 복합, 전용 복합형 지침의 혼재 • 기능별 분류체계 (기능-활동-클래스) • 식별번호, 기록물 기술, 보유기간, 처분행위 등 • 다양한 처분기점 (Trigger) 설정	• 전용 복합, 통합 복합형 지침의 혼재 • 기능별 분류체계 수용 • 기록물 관리 범위, 보유 기간(영구, 30년, 10년)
내용	ISO/TR 21946:2018 • 업무적 요구사항 (5.11.2) • 법적·규제적 요구 사항 (5.11.3) • 공동체 및 사회적 기대치(5.11.4)	• 주 기록법과 대학시스템 보유일정 적용 • 연구 계약 조건 우선 적용 • 연구 행정기록물 위주	• 데이터보호법 적용 • JISC의 기록물보유일정 표준 참조모델 • 연구데이터 기준 상세	• 연방 기록물법 및 주 표준(공통/고유)일정 적용 • 국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의 선별에 초점	• 과학기술당안관리규정 •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과 국가적 중요도 기준
운영	ISO/TR 21946:2018 • 행위 주체의 식별(5.9) • 공식적 승인 절차(4) • 처분 결과 문서화(6.4)	• 주 정부 또는 내부적 승인 주체적 갱신 • 보안 폐기 절차 •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총괄·조정	• 승인 주체 및 처분지침의 총괄 부서 다양 • 보유기간 만료 후, 가치 평가 절차 중시	• 연방 및 주 기록원의 법적 승인 • NAP 적용, 가치평가 • 기록관리 전담부서	• 대학 지도부(당위원회) 승인 • 감정소조(평가팀) 구성, 폐기결과 문서화 • 대학 당안관의 조정

4.1 처분지침의 구조적 측면

분석 대상 국가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지침은 ISO 15489-1:2016에서 규정한 핵심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보편적 흐름을 공유하면서도 각국의 법제 및 대학별 거버넌스 구조에 따라 독자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다.

첫째, 각국의 대학들은 국제표준의 핵심 원칙을 수용하여 업무 활동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구축하고 매체 독립적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다. 각 대학은 직제나 조직 단위가 아닌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설계하였으며, 종이 기록물과 전자 기록물을 별개의 일정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구조적 통제 범위 내에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본을 제외한 ‘공식 기록물(Official Records)’만을 처분지침의 실질적 적용 범위로 제한하는 점도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이다.

둘째, 국제표준을 보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각국의 대학들은 상위 법적 규범과 체계에 따라 보유일정을 수립하는 방식과 지침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다. 미국과 호주의 대학들은 연방기록법 및 각 주의 기록법 등 공공기록물 관리 법제를 상위 가이드라인으로 삼으면서도 각 대학이 처한 거버넌스 환경과 실무에 맞춰 지침의 형태와 유형을 전용형, 통합형 등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영국은 전통적인 기록물법보다는 ‘데이터보호법’을 처분의 최상위 준거로 활용하며 실무적으로는 JISC의 ‘대학 기록보유일정 표준 참조모델’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처분지침의 일관성과 표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한다. 한편 중국은 국가 차원의 강력한 통제 하에 「중화인민공화국 당안법」 및 「과학기술연구당안관리규정」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며, 자율적 지침 설계보다는 국가적

통제와 규격화를 강조한 구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셋째, 분류체계의 설계 방식과 처분지침의 세부 항목 구성에 있어서도 서구권과 중국 간의 외견상 차이가 존재한다. 미국, 영국, 호주는 공통적으로 업무 기능에 기반한 분류체계를 채택하여 유사한 업무 맥락을 공유하는 ‘시리즈’나 ‘클래스’를 처분단위로 설정하였다. 반면 중국은 연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기록물건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묶어 관리하는 세트(set) 단위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ZJU를 비롯한 중국 대학들은 상위 규범에 따라 과학연구 기능 자체를 국가 차원의 공통 코드로 일관되게 범주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이러한 세트 구조의 방식 역시 연구 과정의 완전성과 맥락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적 통제 장치에서 비롯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ISO 15489-1:2016이 규정한 업무 프로세스 중심의 통제 요건을 중국 특유의 거버넌스 구조에 맞춰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처분지침의 구성요소와 통제 항목의 설계 방식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각국 대학의 처분지침은 식별번호, 보유기간, 처분행위를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나, 서구권의 대학은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식별 및 기밀여부, 법적 준거사항 등 연구기록물 관리에 필수적인 통제 항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연구 전반의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차원의 상위 법령에 따른 일괄 통제 방식을 취한다. 이로 인해 각 대학 지침의 독자적인 통제 항목 설계는 최소화되었으며, 지침 내에는 국가 규정에 따른 이관 대상 범위와 보유기간만을 제한적으로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대학 전체의 연구 자산을 국가 과학기술 성과로 귀속시켜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려는 거버넌스의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4.2 처분지침의 내용적 측면

분석 대상 국가의 연구기록물 유형과 평가기준을 내용적 측면에서 종합 비교한 결과, 각국 대학은 연구기록물을 단순한 행정적 부속물이 아닌 대학과 국가의 학술적 자산이자 법적 책무성의 근거로 인식하고 있다. ISO/TR 21946:2018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필수 요건인 ‘업무상 요구사항’, ‘법적·규제적 요구사항’, ‘사회적 기대치’를 평가기준에 공통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나타난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국 대학은 ISO/TR 21946:2018에서 규정한 법적·규제적 요구사항을 엄격히 수용하되 ‘계약 조건 우선 적용 조항’을 보유일정에 공통으로 제도화하는 보편적 흐름을 보였다. 즉, 자체적인 처분지침을 수립·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자금 지원기관이 별도의 방침을 제시하거나 연구 계약서상에 특정 조건을 명시할 경우 이를 대학의 지침보다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미국 UC 시스템은 보유일정의 비고(Comment) 사항에 개별 후원 프로젝트의 조건 및 연방 주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영국 KCL과 UCL 역시 연구데이터 유형에 대해 자금 지원 기관별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세한 보유일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외부기관에서 표준 일정보다 긴 보유기간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인구 집단 보건 연구의 경우 일반적인 보유기간은 20년이나, 연구 후원기관인 의학연구위원회(MRC)에서 별도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문화하였다(KCL, 2026). 이는 연구기록물의 소유권과 관리 책임이 연구 자금을 제공한 국가기관이나 민간 재단과의 법적 계약에 구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이러한 외부 요구사항을 처분지침 내 ‘계약 조건 우선 적용 조항’으로 제도화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고 윤리적으로 민감한 연구기록물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책무성을 장기 보존의 핵심 기준으로 공통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임상시험 데이터, 호주의 유전자 치료 및 첨단 의료 관련 데이터, 중국의 국가 R&D 사업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거나 윤리적 민감도가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최소 30년에서 영구 보존에 이르는 엄격한 보유기간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인체 표본, 임상시험, 방사성 물질 취급 등 위험도가 높고 윤리적 엄격성이 요구되는 연구는 국가·사회적 책무성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각국 대학은 해당 기록물에 훨씬 강화된 장기 보존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위험 관리와 연구 성과의 진실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은 DCC의 평가 모델에 따라 연구의 독창성과 재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미래 후속 연구를 위한 데이터 재사용 및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장기 보존을 위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대학의 처분 지침 내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셋째, 서구권 대학들은 연구기록물의 보유기간 산정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복수의 기준 중 더 긴 보유기간을 최종적으로 채택하는 실무적 특수성이 있다. 특히 호주 대학들은 고정된 보유기간 대신 지식재산권 소멸 후 3년, 계약 만료 후 15년 등 특정 사건(event)과 연계된 트리거를 활용함으로써 기록물의 실질적 증거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임상 연구기록물 등에는 다양한 트리거 가운데 가장 늦은 시점에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복수 기준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일률적인 기산점을 기준으로 고정된 보유기간을 부여하는 우리나라의 산정 방식과 대비된다. 국내 대학의 경우 연구의 복잡한 생애주기나 사후 법적 분쟁 가능성 등을 깊이있게 고려하기보다 행정 편의 중심의 단일 기산점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증거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 기록물이 조기에 폐기되거나 반대로 보존가치가 완전히 상실된 기록물이 불필요하게 장기 보존되는 한계를 드러낸다. 요컨대, 연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다양한 처분 시점을 설정하여 평가 방식의 정교함을 확보하고 있는 서구권 대학의 사례는 국내 대학 기록관리 체계의 제도적 개편 방향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4.3 처분지침의 운영적 측면

분석 대상 국가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운영 및 절차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각국의 대학들은 ISO/TR 21946:2018에서 요구하는 일상적 과정으로서의 평가 수행, 평가 과정의 문서화, 책임 주체의 역할 명시 등을 처분 지침에 내재화 하고 있었다. 각국의 대학은 소송감사정보공개청구 등 법적 분쟁이나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폐기를 금지하는 처분 보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처분 근거와 내역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사후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 전담부서와 아카이브, 연구 수행 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기록물 처분에 대한 최종 승인 권한의 주체와 실무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은 대학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첫째, 처분을 확정하는 승인 체계 및 거버넌스 권한 구조에서 뚜렷한 차이가 관찰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처분지침의 구조적 측면의 분석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미국과 호주의 대학들은 연방기록법 및 각 주의 기록법을 상위 표준으로 삼아, 국가기록원이나 주 정부 기관의 법적 승인을 처분의 선결 요건으로 규정한다. 이는 대학의 개별 지침이 국가 표준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의 특성을 보여준다. 반면 영국의 대학들은 국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되, 대학 이사회나 도서관 위원회 등 학내 최고 의결기구의 승인을 통해 처분을 결정하는 대학 자체적인 자율적 거버넌스를 중시한다. 중국의 경우, 행정적 의결기구 외에 대학 내 최고 권력기구인 학교 당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치게 함으로써 기록물 관리 체계에 정치적 승인 구조를 결합하여 운영한다는 점에서 영미권 국가들과 명확히 차별화된다.

둘째, 현장에서 실제 기록물을 처분하는 실무적 권한과 책임에 대한 배분 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승인체계와 연계하여 미국과 호주는 대학 아카이브 같은 중앙 조직 외에도, 실무 현장의 ‘기록관리 코디네이터(Coordinator)’나 ‘업무 소유자(Business Owner)’에게 구체적인 승인 및 집행 책임을 부여하는 ‘분산형 거버넌스 모델’을 취한다. 특히 기록관리 코디네이터는 현장의 전문가로서 중앙 부서와 실무 책임을 분담하며 처분지침을 자율적으로 조정·운영한다. 영국 역시 비즈니스 보증부나 대학 도서관과 같은 전문조직이 처분지침의 운영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 책임자와의 협업을 유도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반면 중국은 대학 당안관을 중심으로 전문 평가팀의 엄격한 심사와 당 위원회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는 ‘중앙 통제형 모델’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기록물의 국가 자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관리 책임의 국가 귀속을 명확히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셋째,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는 실무적인 실행 방식과 중점 사항 역시 국가별로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난다. 미국은 정형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일반 폐기, 기밀 폐기, 아카이브 이관을 엄격히 구분하여 수행함으로써, 행정적 절차 준수에 집중한다. 영국은 「데이터보호법」을 실무적 처분의 최상위 근거로 삼아 연구기록물의 가치평가와 적시 폐기를 강조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물의 안전한 파기를 도모하는데 모든 역량을 주력한다. 호주의 경우 가치 평가를 정기적·일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생산 시점부터 관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은 대학 내 전담 평가팀을 구성하고 폐기 집행 시 대학 당안관과 연구 부서의 공동 입회를 의무화함으로써 물리적 보안과 국가적 통제를 강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4.4 시사점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 대학의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의 구조와 내용, 운영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평가제도 수립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독립된 ‘연구기록물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연구기록물의 정의와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대학의 공식적인 관리 체계로 편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서구권 대학들은 기록관리 정책과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기록물을 대학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규범을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을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학 또한 행정기록물 위주의 오랜 관리 관행에서 벗어나 연구기록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된 별도 규정을 마련하고, 그 안에 연구기록물의 개념과 관리 범위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윤여진, 김순희, 2025).

둘째, 현행 ‘대학 공통업무 보존기간 준칙’을 준수하되, 대학별 연구 환경과 정책적 특성에 따라 처분지침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실제 연구 현장에 적합한 처분지침을 수립하려면 개별 대학의 실무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행 기록관리기준표는 개별 기관이 자체 보유 처분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 행정기관의 정형화 된 업무를 기준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대학의 연구기록물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연구 프로젝트의 생애주기, 외부 계약 조건, 학문별 데이터의 특수성 등을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연구기록물 전용 처분지침을 대학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국가기록원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법적 효력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통합형 처분지침은 일반 행정과 연구기록물 체계를 일원화하여 관리 인력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시스템 운영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기록물 고유의 복잡한 법적 규제나 분야별 특수성을 지침에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 반면 연구기록물 전용 처분지침은 연구 분야나 재원에 따른 법적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민감한 연구기록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만 이원화로 인해 제도 설계 및 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된다. 따라서 관리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소규모 대학은 통합형이, 대형 연구개발 과제를 다수 수행하는 연구 중심대학이나 특성화 대학은 전용 지침이 적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대학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 및 요구사항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록물 조사는 실효성 있는 처분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첫 번째 논리적 단계이자 필수 요건이다(Franks, 2025). 해외 대학들 역시 지침 재개정이나 신규 업무 추가 시 주기적으로 기록물 조사 및 스크리닝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리즈’ 단위를 기본 통제 단위로 삼아 목록화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는 보유기간을 규정하는 상위 법령 및 규정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의 업무적 요구사항이 통합적으로 분석·반영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취합하여 대학별 맞춤형 처분지침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연구기록물의 평가기준과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연속성과 재사용성을 고려한 학술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해외 주요 대학들은 연구기록물을 미래 연구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여 데이터의 재사용성을 핵심 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영국 JISC가 제시한 평가기준이나 호주 대학들이 독창적 연구 성과물에 대해 장기 보존 가치를 부여하고 환경 및 문화 유산 관련 데이터의 재사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최대 75년의 장기 보유기간을 규정한 사례는 연구기록물의 학술적 잠재 가치를 보유기간 산정의 결정적 준거임을 보여준다. 국내 대학도 행정적·재정적 요구사항의 충족을 넘어, 해당 데이터가 향후 동종 분야 연구의 재현이나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호주와 중국의 사례 처럼 학술적 가치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구기록물을 국가적 유산으로 선별·이관하여 국가 기록관리 체계 내에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기준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대학의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영국 UCL은 DCC의 데이터 평가 모델을 기록물 처분지침 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구데이터의 가치 기준을 확립하고 있으며, KCL은 UKRI 오픈 리서치 협약에 근거하여 연구데이터의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등 연구데이터 정책을 처분지침의 핵심준거로 삼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의 처분지침 역시 급변하는 외부 정책 환경과 대학 내 연구데이터 정책을 반영하여 연구데이터의 실질적 가치 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현행 7종의 획일적인 보유기간 책정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기록물의 특성에 맞게 처분시점과 이관 여부, 보유기간 등을 다차원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국내 대학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현행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7종의 보존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받아, 연구 생애주기나 사후 법적 분쟁 가능성, 혹은 학문별 특수성을 실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권 소멸, 특허 유지 기간, 연구 보조금 지급 종료 등 특정 사건과 연계된 트리거를 바탕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방식은 연구의 법적·상업적 효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기록물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타당한 대안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에도 연구기록물의 법적·학술적 특성에 부합하는 처분시점, 기록관 이관 여부, 보유기간 등을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처분지침의 제도적 운영 측면에서 처분 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책임 구조를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실질적인 처분 권한과 승인 과정을 정립하기 위해 호주의 운영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호주는 NAA가 대학 연구기록물 처분에 대한 법적 효력과 가이드라인을 부여하고 개별 대학의 기록관리 전담부서가 학내 실무적인 최종 처분 승인을 담당하는 이원화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법적 처분기준을 제시하고 대학 기록관이 실무를 집행하는 국내 기록관리 체계와 유사해 현실적인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지침 내에 대학 기록관, 연구 담당 부서, 개별 연구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책임자의 1차 평가, 연구 담당 부서의 법적 준거성 확인 및 학술적 가치 검토를 거쳐 대학 기록관이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송, 감사, 조사 등 법적 계류 사항 발생 시 기록물 폐기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 보류 원칙을 명문화하고, 역사·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기록물이 대학 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이관 심사의 대상과 절차적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여섯째, 연구 담당 부서와 대학 기록관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평가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기록물의 평가 심의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연구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여 검토해야 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현행 기록관리 체제에서 대학 기록관이 이를 단독으로 수행하기란 실무적으로 어렵다. 중국 대학의 ‘감정소조(평가팀)’는 우리나라의 ‘기록물평가심의회’와 외견상 유사해 보이나, 대학 당안관의 기록 전문가와 실제 연구를 수행한 연구팀이 평가 실무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처분지침을 설계하고 보존가치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한층 실효성 있는 협력 체계를 보여준다. 이는 대학 기록관과 연구 담당 부서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심의 전문성 강화의 첫걸음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내 대학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 정한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요건(5인 이내 위원, 2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을 준수하면서도, 연구처장·대학원장 등 주요 보직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연구기록물의 평가 비중이 높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 안건에는 산학협력 및 연구개발 분야 전문가를 특별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하는 유연한 심의 운영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는 ISO 15489-1:2016과 ISO/TR21946:2018을 기반으로 삼아 미국, 영국, 호주, 중국 12개 연구중심대학이 운영 중인 연구기록물 처분지침을 구조적·내용적·운영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별 연구기록물 평가제도의 공통 원칙과 운영 특성을 도출하고,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평가제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해외 사례를 종합한 결과, 연구기록물 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였다. 첫째, 각국 대학은 국가 법령과 기관 규정을 기반으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처분지침을 마련하여 연구기록물을 대학의 핵심 정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둘째, 처분지침은 단순한 이관과 폐기를 위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연구기록물의 신뢰성 확보와 법적·윤리적 위험 관리, 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정보 거버넌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셋째, 연구기록물 평가는 연구 종료 이후 수행되는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연구의 기획, 수행, 종료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통합된 지속적인 관리 활동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기록관리 전문가와 연구자의 협력을 기반으로 일상적인 거버넌스 체계로 정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관리가 법·제도와 운영기준의 미비로 인해 기관별 관리 수준과 평가기준에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한 처분지침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표준과 해외 대학의 운영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국내 대학이 연구의 책임성과 재현성, 연구데이터의 장기적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기록물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실무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연구에서 분석한 12개 대학의 처분지침은 기관별 제정 및 개정 시점이 상이하여 동일한 시점의 정책 환경을 기준으로 비교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제도 변화와 정책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외 사례의 비교·분석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상 국내 대학의 조직 구조, 연구 환경 및 법·제도적 여건을 반영한 구체적인 연구기록물 평가모델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대학의 연구기록물 관리 체계와 관련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 환경과 기록관리 체계에 적합한 연구기록물 평가 모델과 처분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지현 (2013). 국외 정부연구비지원기관의 연구데이터 관리정책 분석: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251-274.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251>
- 박형정, 김지현 (2021). 대학도서관의 데이터관리계획 서비스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187-2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3.187>
- 설문원 (2006). 공공업무의 체계적 기록화를 위한 보유일정표 설계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4), 199-219. <https://doi.org/10.4275/KSLIS.2006.40.4.199>
- 윤여진, 김순희 (2025). KS X ISO 15489 기반 국립대학 연구기록물 관리 규정의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5(3), 303-330.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303>
- 이미영 (2014). 과학기술분야 연구기록의 평가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1, 75-111. <https://doi.org/10.20923/KJAS.2014.41.075>
- 이미영 (2015). 공적(公的)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기록 평가기준 연구. 기록학연구, 46, 287-323. <https://doi.org/10.20923/KJAS.2015.46.287>

- 이미영 (2016). 처분일정표를 바탕으로 한 연구기록 평가제도 연구: 호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0, 311-349.
<https://doi.org/10.20923/KJAS.2016.50.311>
- 이미영, 박윤미, 심세현, 김슬기, 김현우, 주미경 (2018).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공통기능 보존기간기준표 설계 사례.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3), 125-143.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125>
- 이민정 (2023). 미국의 「오픈사이언스의 해」 선포와 정책적 시사점 (KISTEP 브리프 5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43178
- 이수진 (2018). 중국의 세계일류대학 육성정책의 성과 및 ‘쌍일류’ 건설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분석. 비교교육연구, 28(4), 107-135.
<https://doi.org/10.20306/kces.2018.28.4.107>
- 장수현, 남영준 (2024). 일본 대학도서관의 연구데이터 관리 지침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5(3), 247-270.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3.247>
- 정수정 (2026. 4. 2). [숫자로 풀어본 대학 순위] QS 세계대학순위, 국내 대학 3개년 성적은?…연세대…고려대 논문력 3년간 30점 급등.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275>
- 조진실, 홍미영 (2024).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KISTEP 브리프 13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93571
- 채현수, 전정현, 김기영, 이지연 (2021). 대학구성원의 연구데이터 관리 인식 및 경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8(4), 173-198.
<https://doi.org/10.3743/KOSIM.2021.38.4.173>
- 한국기록학회 (2018). 기록학용어플랫폼.
- 현문수 (2019). 국가기록평가의 권한과 책임 분석: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중앙 및 연방정부 기록의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9(4), 175-209.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175>
-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n.d.). Carnegie Classification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Carnegie Classifications. Available: <https://carnegieclassifications.acenet.edu>
- Australasian Digital Recordkeeping Initiative (2012). Glossary of Disposal Triggers: Exposure Draft. Council of Australasian Archives and Records Authorities. Available:
<https://www.caara.org.au/wp-content/uploads/2023/10/ADRI-Glossary-of-Disposal-Triggers.pdf>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07). Records authority. Available:
<https://services.anu.edu.au/files/guidance/ANU%20Records%20Authorities.pdf>
-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2022). Procedure: Records Management. Available:
https://policies.anu.edu.au/ppl/document/ANUP_000513
- China Education and Research Network (2025. 4. 21). 近30所超百亿! 部属高校2025年预算, 公布[Nearly 30 universities exceed 10 billion! 2025 departmental budgets of affiliated universities announced]. 中国教育和科研计算机网. Available:
https://www.edu.cn/rd/gao_xiao_cheng_guo/ssgx/202504/t20250421_2664611.shtml
- Franks, Patricia C. (2025).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3rd ed.). Chicago: ALA Neal-Schuman.
- Gibbons, Michael T. (2024). Higher Education R&D Expenditures Increased 11.2%, Exceeded \$108 Billion in FY 2023. National Center for Science and Engineering Statistics. Available: <https://nces.nsf.gov/pubs/nsf25313>
-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24). Guide to the UK General Data protection principles. Available: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data-sharing/data-sharing-a-code-of-practice/data-protection-principles/>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Part 1: Concepts and principles (2nd ed.) (ISO 15489-1:2016). <https://www.iso.org/obp/ui/#iso:std:iso:15489:-1:ed-2:v1:en>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Records management — Appraisal for managing records (ISO/TR 21946:2018). <https://www.iso.org/obp/ui/en/#iso:std:iso:tr:21946:ed-1:v1:en>
-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2025). Business classification scheme and records retention schedule. Available:
<https://www.jisc.ac.uk/guides/records-retention-management>

- King's College London (2019). Corporate Records Manage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kcl.ac.uk/assets/policyzone/informationpolicies/records-management-policy.pdf>
- King's College London (2026). Records retention schedule: Section D - Research records. Available:
<https://www.kcl.ac.uk/assets/aboutkings/business-assets/pdf/retention/section-d.pdf>
- KOREA-U.S. SCIENCE COOPERATION CENTER. (2011). 미국의 대학 운영 정책 및 현황. Available:
https://kusco.org/wp/wp-content/uploads/2018/05/st_nov.pdf
- Mcdonald, J. & Léveillé, V. (2014). Whither the retention schedule in the era of big data and open data?. *Records Management Journal*, 24(2), 99-121. Available: <https://doi.org/10.1108/RMJ-01-2014-0010>
- Nanjing University (2021a). 南京大学档案管理办法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archives of Nanjing University]. 南京大学档案馆. Available: <https://historymuseum.nju.edu.cn/info/2941/13461.htm>
- Nanjing University (2021b). 南京大学科学技术研究档案管理办法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rchives of Nanjing University]. 南京大学档案馆. Available:
<https://historymuseum.nju.edu.cn/info/2941/13481.htm>
- National Archives of Australia. (n.d.). Normal administrative practice (NAP). Available:
<https://www.naa.gov.au/information-management/disposing-information/normal-administrative-practice-nap>
- Research England (2023). Research England: How we fund higher education providers. UK Research and Innovation. Available:
<https://www.ukri.org/publications/research-england-how-we-fund-higher-education-providers/>
- Saffady, W. (2018). Records management experience with big bucket retention: a status report. ARMA International Education Foundation. Available:
<https://armaedfoundation.org/wp-content/uploads/2021/06/AIEF-Research-Paper-Saffady-Big-Buckets-2018-081518.pdf>
- State Archives Administration of China (2020, October 9). 科学技术研究档案管理规定(国家档案局、科技部令第15号) 正式发布 [Official release of the "Regulations on the Administ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rchives" (No. 15 of the State Archives Administration of China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中华人民共和国国家档案局. Available: <https://www.saac.gov.cn/daj/yaow/202010/601f6491eabb4a2aa207685fb7a07c28.shtml>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d.a). Retention and disposal. Available: <https://records.unimelb.edu.au/guides/disposal>
-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d.b). Retention and Disposal Authority Roll-Up project. Available:
<https://records.unimelb.edu.au/about/services/projects/retention-and-disposal-authority-roll-up-project/#jump1>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22). Handbook of Business Procedures (Part 20. Records Management). Available:
<https://afm.utexas.edu/hbp/part-20-records-management>
-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2024). University of Texas Records Retention Schedule (UTRRS 8.1). Available:
<https://records.utexas.edu/sites/default/files/documents/UTRRS8.1%20rev.%2010-02-2024.xlsx>
- Tsinghua University (2025a). 清华大学科学技术研究档案管理办法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rchives of Tsinghua University]. 清华大学档案馆. Available:
<https://dag.tsinghua.edu.cn/info/1056/3373.htm>
- Tsinghua University (2025b). 清华大学科学技术研究档案管理实施办法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archives of Tsinghua University]. 清华大学档案馆. Available:
<https://dag.tsinghua.edu.cn/info/1056/3372.htm>
- Universities Australia (n.d.). Research Funding. Available:
<https://universitiesaustralia.edu.au/policy-submissions/research-innovations/research-funding-2-2/>
- University College London (2021). Records Retention Schedule for files relating to research data. Available:
<https://www.ucl.ac.uk/library/collections/records-office/records-retention/retention-schedule/research-data>
- University College London (2022). UCL Records Management Policy. Available:
<https://www.ucl.ac.uk/library/collections/records-office/ucl-records-management-policy>

- University College London (n.d.). Archiving, preserving and curating. Available:
<https://www.ucl.ac.uk/library/open-science-research-support/research-data-management/best-practices/how-guides/archiving>
- University of California Office Of the President (2016). BFB-RMP-2: Records Retention and Disposition: Principles, Processes, and Guidelines. Available: <https://policy.ucop.edu/doc/7020454/BFB-RMP-2>
- University of California Office Of the President (2023, May). Administrative Records Relating to Research. Available:
<https://www.ucop.edu/research-policy-analysis-coordination/policies-guidance/record-retention/tables.html>
- University of Cambridge (2021). Statement of Records Management Practice and Master Records Retention Schedule. Available:
https://www.information-compliance.admin.cam.ac.uk/sites/default/files/records_statement_and_retention_schedule.pdf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17). Record Appraisal Procedure. Available:
<https://www.unsw.edu.au/content/dam/pdfs/planning-assurance/records-and-archives/Record%20Appraisal%20Procedure%20V1.0%202022.pdf>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5a). Retention periods for records relating to research. Available:
<https://www.unsw.edu.au/content/dam/pdfs/planning-assurance/records-and-archives/Retention%20Periods%20for%20Records%20relating%20to%20Research%20-%20Updated%20May%202025%20-%20v2.0.pdf>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25b). Information Governance Policy. Available:
<https://www.unsw.edu.au/content/dam/pdfs/governance/policy/hub/informationgovernancepolicy.pdf>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13). Records Retention/Disposition Authorization Signature Pages. Available:
<https://cms.library.wisc.edu/archives/wp-content/uploads/sites/21/2024/12/027000-34001720-Extended.pdf>
-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n.d.). UW-Madison Records Retention Schedules and Disposition. Available:
<https://www.library.wisc.edu/archives/records-management/uw-madison-records-retention-schedules-and-disposition>
- Whyte, A. & Wilson, A. (2010). How to appraise and select research data for curation. Digital Curation Centre. Available:
<https://www.dcc.ac.uk/guidance/how-guides/appraise-select-data>
- Wilson, K., Schreier, A., Griffin, A., & Resnik, D. (2007). Research Records and the Resolution of Misconduct Allegations at Research Universities. *Accountability in Research*, 14(1), 57-71. <https://doi.org/10.1080/08989620601126017>
- Zhejiang University (2021). 浙江大学档案管理办法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archives of Zhejiang University]. 浙江大学档案馆. Available: https://acv.zju.edu.cn/site/dafg_gzzd_view.html?id=1345
- Zhejiang University (2025). 浙江大学立卷部门档案归档范围和保管期限规定 (2025年修订) [Regulations on the Scope of Archiving and Retention Periods for Filing Departments of Zhejiang University (2025 Revision)]. 浙江大学档案馆. https://acv.zju.edu.cn/site/bgxx_view.html?id=4201
- Zhejiang University (n.d.). 浙江大学档案鉴定、销毁规定 [Provisions on the appraisal and destruction of archives of Zhejiang University]. 浙江大学档案馆. Available: https://acv.zju.edu.cn/site/dafg_gzzd_view.html?id=86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e, Hyun-soo, Chun, Jung-hyun, Kim, Gi-young, & Lee, Jee-yeon (2021) A study on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university constituents on research data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8(4), 173-198. 10.3743/KOSIM.2021.38.4.173
- Cho, Jin-sil & Hong, Mi-young (2024).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in China (KISTEP Brief No. 136).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93571
- Hyun, Moon-soo (2019). An analysis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in national records appraisal: Focusing on the appraisal of central and federal government records in the UK, USA,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 and Records Management, 19(4), 175-209. <https://doi.org/10.14404/JKSARM.2019.19.4.175>
- Jang, Su-hyun & Nam, Young-joon (2024). A study on the analyzing research data guidelines of Japanese universit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3), 247-270. <https://doi.org/10.14699/kbiblia.2024.35.3.247>
- Jeong, Su-jeong (2026, April 14). [University rankings in numbers]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what are the three-year results of domestic universities?... Yonsei and Korea University's research power jumped by 30 points over three years. *University News Network*.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275>
- Kim, Ji-hyun (2013). An analysis of data management policies of governmental funding agencies in the U.S., the U.K., Canada and Australi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3), 251-274. <https://doi.org/10.4275/KSLIS.2013.47.3.251>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18). Archival Terms Platform.
- Lee, Min-jung (2023). The declaration of the "Year of Open Sci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KISTEP Brief No. 59).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https://www.kistep.re.kr/board.es?mid=a10306010000&bid=0031&act=view&list_no=43178
- Lee, Mi-young (2014). A study on the appraisal of research records in science and technology: Focusing on foreign cas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1), 75-111. <https://doi.org/10.20923/KJAS.2014.41.075>
- Lee, Mi-young (2015). A study on the appraisal criteria of research records in public research institu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287-323. <https://doi.org/10.20923/KJAS.2015.46.287>
- Lee, Mi-young (2016). A study on the research records appraisal system based on records schedule: Focusing on the case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50), 311-349. <https://doi.org/10.20923/KJAS.2016.50.311>
- Lee, Mi-young, Park, Yun-mi, Shim, Se-Hyun, Kim, Seul-gi, Kim, Hyun-woo, & Joo, Mi-kyoung (2018). A case study on redesigning the retention schedule of common functions in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of science and technolog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3), 125-143. <https://doi.org/10.14404/JKSARM.2018.18.3.125>
- Lee, Su-jin (2018). An analysis of Chinese policy for establishing the world class universi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Double First Class University Plan'.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8(4), 107-135. <https://doi.org/10.20306/kces.2018.28.4.107>
- Park, Hyeong jeong & Kim, Ji-hyun (2021). A study on the considerations for data management plan service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2(3), 187-215. <https://doi.org/10.14699/kbiblia.2021.32.3.187>
- Seol, Moon-won (2006). Redesigning retention schedules for accurate document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4), 199-219. <https://doi.org/10.4275/KSLIS.2006.40.4.199>
- Yoon, Yeo-jin & Kim, Soon-hee (2025). Analysis and improvement plans for research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s of national universities based on KS X ISO 1548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25(3), 303-330. <https://doi.org/10.14404/JKSARM.2025.25.3.303>